

S 5	보건복지부 보	도 자	豆	다시, 간학에 각! 시로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6.29.(수) 11:30	배포 일시	2022. 6. 29.(수)	
	건강보험정책국	책임자	과장	현수엽 (044-202-2710)
담당 부서		담당자	사무관	이웅채 (044-202-2702)
	보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용희 (044-202-2715)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65%) 건강보험료 월 3만 6.000원 내려간다

- 국회 여・야 합의에 따른 1차 개편('18.7.)에 이어 예정된 2차 개편 실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입법 예고(6.30일~7.27일)
- 지역가입자 연 2조 4,000억 원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 보험료가 인상되는 일부 세대에 대하여 최근 물가 상황 등 경제적 여건을 고려 하여, 한시적 경감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

- ♦ 2022년 9월부터 시행(6.30일~7.27일 입법예고)
- ◈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대폭 확대 및 소득 정률제 시행
- ◈ (직장기입자·피부양자) 보수(월급) 외소득 부과기준 및 피부양자소득 기준 강화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 (보험료 인하) 561만 세대, (인상) 23만 세대, (무변동) 275만 세대

- ①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일괄 5,000만 원)로 재산보험료 24.5% 감소
- ② 역진적이던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 정률제 도입
- ③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축소(179만 대→12만 대)
- ④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보험료 일원화*
 - * 최저보험료 기준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평균 월 4,000원)되는 세대에 대해 인상분 한시경감 적용
- ⇒ 지역가입자 65%(561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24%(3.6만 원) 인하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1,909만 명 → (보험료 인상) 45만 명, (무변동) 1,864만 명

- ① 보수(월급) 외 고소득자 등 2% 직장인(45만 명) 부과 확대
- ② 대다수 직장인(98%) 보험료는 변동 없음

피부양자 기부양자 1,809만 명

→ (지역가입자 전환) 18만 세대 27.3만 명, (피부양자 유지) 1,781.7만 명

- 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27.3만 명)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에 대해 4년간 보험료 일부 한시 경감 적용
- ② 대다수 피부양자(98.5%)는 보험료 변동 없음







-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17.3월)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어,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 개편방안 시행 시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24%) 줄어들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112만 명)의 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 *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고직(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은퇴자 등

【 개편 배경 및 기본방향 】

- □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 방식이 문제**가 되어왔고,
 -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 지적되어 왔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 체계 1·2단계 개편안」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였다.
- □ 여·야 합의에 따라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하였고, 2022년 9월 1일에는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어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 또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 하도록 하되,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 개편안 세부내용 】

지역가입자

- ◇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 확대
 - * 재산 수준별 500만 원~1,350만 원 재산 공제 → 일괄 5,000만 원으로 확대
- **◇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 도입**
 - * 낮은 소득 구간에서 최대 20%에 달하던 소득대비 보험료율을 6.99%로 정률화
-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보험료 일원화
 - * 월 14,650원 → 월 19,500원(직장가입자와 동일)
- **◇ 근로・연금소득 평가율 인상(30% → 50%)**
 - *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해 평가율을 인상하나, 소득 정률제의 영향으로 연금소득 연 4,100만원(월 341만원) 이상인 4.2% 인상(8.3만 명)
- ◇ 자동차 보험료 기준변경・축소
 - * 기준변경·축소 : 1,600cc이상 등 부과 → 4,000만 원 이상만 부과(179만대 → 12만대)
- □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 6,000원) 낮아져, 지역 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 *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 (현재) 15만 원 → (9월부터) 11.4만 원







- □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 축소)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 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2억 상당)으로 확대한다.
 - * 현재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평균 재산과표 : 1억 5,000만 원

< 재산 보험료 부과 산정 방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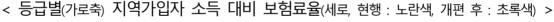
- ◆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시가의 약 70%)에 행정안전부 공정시장 가액비율(60%)을 곱하여 재산과표산출(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 산출된 재산과표에 기본 공제(9월부터 5,000만 원)한 값에 보험료 부과
- → 가령 <u>시가 3.6억 원 주택</u>은 공시가 2.5억 원, 재산과표 1.5억 원 → 9월부터 5,000만 원 기본공제 후 **1억 원에만 부과**
- 이번 개편으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
 - ※ 재산보험료 납부 세대: (현재) 523만 세대(60.8%) → (9월부터) 329만 세대(38.3%)
-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1만 원에서 월 3.8만 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조 2,800억 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그 밖에 2단계 개편과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개정(2019년 12월)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1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 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74만 세대 대상 월 평균 2.2만 원 인하)
 - ※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 예정, 7월 1일부터 공단 지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개인정보제공 동의 필요하며, 무주택 임차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서류 첨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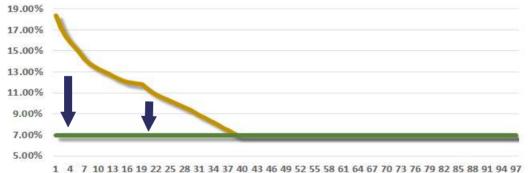






- □ (자동차보험료 축소)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 ※ 구매 당시에 4,000만 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이후 가치가 4,000만 원 미만으로 허락한 경우(「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기준」 상 감액률 기준)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9월부터 12만 대로 감소**한다.
- □ (소득 정률제)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2년 205.3점)을 곱하여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된다.
 - 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 원 (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 ※ (예시) 연소득 500만 원인 경우 : (현재) 50,290원(12.1%) → (개편 후) 29,120원(6.99%)연소득1,500만 원인 경우 : (현재)130,770원(10.5%) → (개편 후) 87,370원(6.99%)





- □ (연금·근로소득 평가율)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 했던 것을, 50%*로 조정하여 소득 전체(100%)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 * 공적연금소득 50%는 본인 기여분인 점, 직장가입자의 경우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만 반영
 -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95.8%)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설명한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 □ (최저보험료 일원화)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되어왔다.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9,500원으로 일원화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된다.
 - ※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 (현재) 14,650원(연 소득 100만 원 이하)→ (9월부터) 19,500원(연 소득 336만 원 이하)····직장가입자와 동일
 - 이는,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으로서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 보험료** 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한 것이다.
 -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242만 세대, 월평균 약 4,000원 인상)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 이들 세대는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된**다.







< 주요 사례 >

① 사업 소득 세대: 월 8만 3,000원 인하 (17만 원→8.7만 원)

A씨(남, 60세)는 혼자 철물점을 운영하며 사업소득 **연 1,500만 원(월 125만원)**, **보증금 1억 2,000만 원 전세**에 거주, **7년된 시가 1,200만원 1,800cc 차량** 보유

-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연 소득 1,500만 원에 대하여 월 **13만 원**, 전세 보증금에 대한 재산보험료 **3만 원**, 자동차에 대하여 월 **1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 9월부터는 **재산 공제제도 확대, 소득 정률제 도입, 자동차 보험료 대상 축소로** 보험료가 48.8% 줄어든다.

<현행>		<월 보험료 비교>	<9월부터>	
월 17만 원	13만 원	소득 보험료	8.7만 원	
×	3만 원	재산 보험료	0원	월 8.7만원
-₩ -	1만 원	자동차 보험료	0원	~

② 연금 소득 세대: 월 3만 2,000원 인하 (17.6만 원→14.4만 원)

B씨(여, 68세)는 공적연금 소득 **연 840만 원(월 70만 원)**이며, 재산과표 **2억 5,000만 원**(시가 6억, 공시 4.2억) 상당 주택, **1년 된 시가 2,500만 원**(1,980cc) 자동차 보유

- 강원도에 거주하는 B씨는 연 소득 840만 원에 대하여 월 **3만 원**, 재산에 대하여 월 **13만 원**, 자동차에 대하여 **월 16,21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 9월부터는 재산 공제제도 확대. 소득 정률제 도입 등으로 보험료가 18.2% 줄어든다.

<현행>		<월 보험료 비교>	<9월부터>	
월 17.6만 원	3만 원	소득 보험료	2.4만 원	
*	13만 원	재산 보험료	12만 원	월 14.4만원
-₩-	1.6만 원	자동차 보험료	0원	₩







③ 사업 소득 세대: 월 8만 3,000원 인하 (18.5만 원→10.2만 원)

C씨(남, 36세)는 사업소득 **연 720만 원(월 60만 원)**이며, 재산과표 **1억 5,500만 원**(시가 3.6억 원 공시 2.5억 원 주택담보대출 1억 원) 상당 주택 보유

- 충청도에 거주하는 C씨는 연 소득 720만 원에 대하여 월 7.6만 원, 재산에 대하여 월 10만 9,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 9월부터는 **재산 공제제도 확대,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보험료가 13.2만 원으로 줄어 들게 되며, 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까지 적용받을 경우 추가로 5,000만 원 재산공제를 받아 10.2만 원으로 줄어 지금보다 보험료가 44.9% 줄어든다.

<현행>		<월 보험료 비교>	<9월부터>	
월 18.5만 원	7.6만 원	소득 보험료	4.2만 원	
×	10.9만 원	재산 보험료	6만 원	월 10.2만 원
-₩-	0원	자동차 보험료	0원	—

4 연금 소득 세대: 월 4만 2,000원 인하 (21.4만 원→17.2만 원)

D씨(여, 68세)는 연금수급자로 **공적연금 연 2,160만 원**(월 180만 원), 재산과표 **2억 1,000만원**(시가 5억 원, 공시 3.5억 원) 상당 주택 보유, 1년 된 **시가 3,500만 원**(2,495cc) 자동차 보유

- 부산시에 거주하는 D씨는 6.7만 원의 소득보험료와 재산에 대하여 월 12.5만 원,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2.2만 원이 부과되어 매월 21.4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다.
- 9월부터는 **재산 공제제도 확대 소득 정률제 도입, 자동차 보험료 대상 축소**에 따라 **17.2만 원**을 납부하게 되어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19.6% 줄어든다.

<현항	! >	<월 보험료 비교>	<9월 -	부터>
월 21.4만 원	6.7만 원	소득 보험료	6.3만 원	
*	12.5만 원	재산 보험료	10.9만 원	월 17.2만 원
(-₩-)	2.2만 원	자동차 보험료	-	A







직장가입자

◇ 보수(월급)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 * (현재는) 3,400만 원 초과 시 부과 → (9월부터) 2,000만 원 초과 시 부과
- ◇ 직장인 98%의 보험료는 변동 없음
- □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하여 2%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 만 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 다만,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예시) 직장가입자면서 보수(월급) 외 본인 명의의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2,100만 원이 발생한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산식	월 부과 금액
{(2,100만 원-2,000만 원)÷12개월)} ×6.99%	5,820원

○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45만 명(직장가입자의 약 2%)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1만 원 인상(33.8만 원→38.9만원)되며,
그 외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 주요 사례 >

① 이자·배당소득 보유자: 월 2만 3,000 원 인상(21만 원→23.3만 원)

E씨(여, 48세)는 **월 보수(월급)가 600만 원**이며, 월급 외에도 **이자·배당소득**으로 **연 2,4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있음

- 경상도에 사는 E씨는 **월 보수**가 **600만 원**이고, **보수 이외**에 **연 2,4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있으나, **월급에 대해서만 월 21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 **9월부터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 400만 원에 대해서만 **2.3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현항	! >	<월 보험료 비교>	<9월 -	부터>
월 21만 원	21만 원 *가입자부담분	보수 보험료	21만 원 *가입자부담분	월 23.3만 원
**	-	보수 外 소득 보험료	2.3만 원	₩

2 일반 직장인: 보험료 변동 없음

F씨(남, 33세)는 **월 보수**가 **300만 원**이며, **월급 외 부수입**(사업소득)이 **연 200만 원**임

-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장인 F씨는 **월 보수가 300만 원**이므로 **월 10.5만 원**의 보험료를 내왔다.
- F씨는 월급 외 사업소득이 연 200만 원 있으나, **2,000만 원 미만**으로 **기존에 납부하던 보험료**만 내면 된다.

<현항	 >	<월 보험료 비교>		부터>
월 10.5만 원	10.5만 원 *가입자부담분	보수 보험료	10.5만 원 *가입자부담분	월 10.5만 원
₩	-	보수 外 소득 보험료	-	₩







피부양자

- ◇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27.3만 명, 1.5%)
 - 소득요건 : 연 소득 3,4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초과
 - 물가 상승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 전환자에 대해서는 4년간 보험료 일부 경감*
 - * 경감률 : (1년차) 80% → (2년차) 60% → (3년차) 40% → (4년차) 20%
- ◇ 강화 예정*이었던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유지(재산 과표 5.4억 원)
 - * 재산요건 : (현행) 재산 과표 5.4억 원 초과→ (당초 개편안)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
- ** 1단계 부과체계 개편 시행('18.7월) 이후 4년간 공시가격 55.5%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 2019년 5.24% → 2020년 5.98% → 2021년 19.05% → 2022년 17.15%)
- ◇ 피부양자의 98.5%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
- ①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 □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단계 개편에 이어 소득요건을 강화한다.
 - *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 : 한국 1.00명, 독일 0.28명, 대만 0.49명(2020년 기준)
 - ** 소득요건 : 한국 3,400만 원(개편 전), 독일 약 720만 원, 일본 약 1,278만 원
 -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 27.3만 명**(피부양자의 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하여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 * 경감률: (1년차) 80% → (2년차) 60% → (3년차) 40% → (4년차) 20%
- 이에 따라,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 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9만 위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2]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유지된다.

- □ 당초 국회에서 부과체계 개편안 합의안('17년 3월)에 따르면, 2단계 개편 시 소득 1,000만 원 초과인 피부양자는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 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 * 재산요건 : (현행) 재산 과표 5.4억 원 초과 → (당초 개편안)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
 - 그러나, 최근 4년간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 환경이 변화하였으므로** 2017년 국회 합의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최근 변화한 상황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보험료부과제도개선 위원회** 등에서 제기되었다.
 - *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 : 2019년 5.24% → 2020년 5.98% → 2021년 19.05% → 2022년 17.15%
 - **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건강보험법 제72조의2에 의거, 보험료부과제도개선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위원장: 복지부 2차관)
 - 이에 따라 그간 인상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을 고려**하여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유지될 예정이다**.
 - ※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매매): 3억 원('17년) → 5억 원('21년), KB주택시장동향







< 주요 사례 >

① 공적연금 수급자: 월 3만 원 납부

※ 한시적 경감으로 월 3만원 납부 예정

G씨(여, 72세)는 매월 **200만 원(연 2,400만 원)**의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로 연간 **432만 원**(월 36만 원)의 사업소득 있음 시가 2억 원 상당의 토지(**재산과표 1억 원**)를 보유하고 있음

- 제주도에 사는 G씨는 연 소득 2,832만 원, 재산과표 1억 원이므로 피부양자 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
- 9월부터는 연소득 2,000만 원 초과자이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150,080원 = 소득 95,060원 + 재산 55,020원)
- 다만, 한시경감조치로 인하여 보험료의 80%를 경감받아, 실제로 9월 납부 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3만 원이다.

<현행	! >	<월 보험료 비교>	<9월 -	부터>
위 제단의	0만 원	소득 보험료	9.5만 원	월 3만 원 (한시 경감 반영)
	-	재산 보험료	5.5만 원	₩

② 공적연금 수급자: 보험료 변동 없음(피부양자 자격 유지)

H씨(남, 75세)는 **월 90만 원의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전세 보증금 **3억 원 주택**에 임차 거주 중

- 대구에 사는 H씨는 월 90만 원 가량의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 부과체계 개편 후에도 피부양 자격이 유지되어 보험료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현형	! >	<월 보험료 비교>	<9월-	부터>
월 0만 원	0만 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0만 원	월 0만 원 <u>'</u>
₩	-		-	₩







- □ [추가 개편 사항] 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 도입
-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차* 가 있어 폐업 등으로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고 있다.
 - *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소득을 받아 부과 중으로 1~2년 기량 부과 시차 발생 중
- 다만,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나, 지역가입자는 사후 정산제도 부재

지역가입자 조정제도 악용사례

(지난 3년간 예상평균보험료) 1,492,260원 → (실질 월보험료) 0원

매년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사후에 확인된 소득이 있음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 이에, 보험료를 조정받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 2023년 11월부터 정산을 시행한다. (2022년 9월 조정자부터 적용, 여ㆍ야합의안 외 추가 개편 사항)

【기대효과】

- □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9월부터는 소득·재산이 적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가 일부 인상된다.
 -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실제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가입자별 보험료 변동 전망 >

구 분		보험료 변동				
지역	인 하	561만 세대	△ 3.6만 원(24%↓)	15만 원 → 11.4만 원		
가입자	인 상	23만 세대	+ 2.0만 원(6.4%↑)	31.4만 원 → 33.4만 원		
직장	인 상	45만 명	+ 5.1만 원(15.1%↑)	33.8만 원 →38.9만 원 (가입자 부담분 기준)		
가입자	무 변 동	1,864만 명	-	-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 환	27.3만 명	+ 3만 원	0만 원 → 3만 원		
	유 지	1,781.7만 명	-	-		

【 재정 영향 】

- □ 이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연간으로 2조 4,000억 워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은 2017년부터 예정되어 있어, 그간 재정 추계 등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고려되어 왔으며, 예측된 재정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자동차 보험료 개선 등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논의 등을 통하여 지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 추진 계획 】

-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7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 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 또한, "개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입법예고된다.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중심으로 개선되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FAX: (044) 202 - 393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붙임> 건강보험료 개편 인포그래픽

<별첨>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12문 12답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붙임

건강보험료 개편 인포그래픽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2022년 9월 시행됩니다.

재산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은 더 높아집니다.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부담은 더 낮아지고 형평성은 더 높아집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일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집니다.



피부양자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2022년 9월 시행됩니다.

재산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은 더 높이집니다.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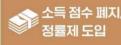
부과체계 2단계 개편



500만원~1,350만원 차등공제

[재산금액 구간 별 적용]

재산과표 5,000만 원 일괄공제



소득점수제(등급별)

정률제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 적용)

자동차 보험료

00

배기량 기준 별 차등부과 1,600~ 3,000cc 보험료 30% J

4천만원이상 자동차만 보과



최저보험료

기준 변경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연소득 100만원이하

→월 14,650 원

연소득 336만 원이하 →월 19,500 원 [직장가입자와 동일]



지 장 가 입 자

N

역 가 입

자



연간 3,4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부담

연간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부담



Ш 부 양

자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과표 5.4억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현행 유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2022년 9월 시행됩니다.

지역가입자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더 낮아지고 형평성은 더 높아집니다!

다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월보험료 인하(평균⊝3만6천원



소득점수 폐지 정률제 도입 폴 |





소득

최저보험료 기준변경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월 14,650 원 납부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월 19,500 원 납부 ※ 보험료 인상분 한시적 경감 적용



재산공제 확대



500만원~1,350만원 **차등공제**





자동차보험료 부과대상 축소



배기량 기준 별 차등부과

1,600~ 3,000cc 보험료 30%↓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2022년 9월 시행됩니다.

지장가입자 보수 (월급) 외소득이 많은 일부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집니다.







연간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부담



연간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부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2022년 9월 시행됩니다.

파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 등 피부양자 인정기준 단계별 강화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요건 강화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피부양자 인정기준 재산요건 유지



과표 5.4억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현행유지

※다만,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준변경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한시적 경감 적용







